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0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2020. 4. .

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 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0. 4. 22

기획행정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일자: 2020. 4. 9.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총무과장)
- 회부일자: 2020. 4. 9.
- 검토기간: 2020. 4. 9. ~ 4. 16.(5일간)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.

3. 개정 주요내용

- 상위법 근거 조문 변경(안 제1조)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(안 제12조제2항, 안 제15조제3항, 안 제16조제2항)
- 장기재직휴가 확대(안 제16조제5항)

4. 참고사항(관련 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5, 제7조의7 등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0. 3. 2. ~ 3. 2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,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 하는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(안 제15조제3항)
 -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장기재직휴가 상향 조정(안 제16조제5항)하였으며,

재직기간	장기재직 휴가일수		비고
	현행조례	개정조례안	
① 10년 이상 20년 미만	10일 이내	20일 이내	재직기간별 휴가일수: 최대 30일 → 50일로
② 20년 이상	20일 이내		상향조정
③ 20년 이상 30년 미만		20일 이내	
④ 30년 이상		10일 이내	

* 재직기간별 사용하지 아니한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 사용 가능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내용 반영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,
- 안 제16조제5항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시 및 각 구·군¹⁾에서 일·가정·양립·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, 우리 구에서도 지자체간 형평성 및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<이상 검토보고를 마침>

1) 대구시 및 구·군 장기재직휴가 실시(예정) 현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휴가일수	비 고
대구시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재직: 20일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: 20일 - 30년 이상 재직: 20일	50일	
중구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재직: 30일 (단, 위 기간 포함)	- 10년 이상 재직: 50일	50일	
동구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재직: 30일 (단, 위 기간 포함)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20일 - 20년 이상 재직: 50일 (단, 위 기간 포함)	50일	학습 휴가
서구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재직: 30일 (단, 위 기간 포함)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20일 - 20년 이상 재직: 40일 (단, 위 기간 포함)	40일	
남구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: 20일 - 30년 이상 재직: 10일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: 20일 - 30년 이상 재직: 20일	50일	개정중
북구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재직: 30일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: 20일 - 30년 이상 재직: 20일	50일	개정중
수성구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재직: 20일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: 20일 - 30년 이상 재직: 10일	40일	개정중
달성군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10일 - 20년 이상 재직: 20일	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: 20일 - 20년 이상 재직: 30일	50일	

【 관련 법령 】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5(병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1.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2.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-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.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)·사산

의 경험이 있는 경우

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3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-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 1.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2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3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4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-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어린이집등"이라 한다)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 2.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「민법」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
-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-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